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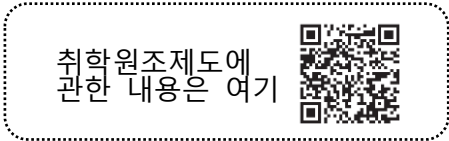
※취학원조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이 안내를 잘 읽고 소중히 보관해 주십시오.

## 2026년도 취학원조 제도의 안내

보호자 여러분께

사카이시 교육위원회

사카이시에서는 공립 초·중학교(국립, 지원학교는 제외)에 취학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취학이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학용품비와 등의 비용 일부를 원조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 
원조를 희망하시는 분은 1~5의 설명을 잘 읽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
◎ 취학원조 신청은 매년 하셔야 합니다. 또한 3월에 신입생 '입학준비금'을 수급하신 분도 '학용품비' 등의 원조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
### 1 신청방법 등

#### ◆ 신청 기간 2026년 4월 15일(수)~2026년 4월 30일(목)

※신청 기간이 지난 5월 이후에도 내년 2월 말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. 다만, 자격 인정을 받게 되면 신청하신 월 해당분부터 지급됩니다.

주의

- 학교, 구청 창구에서 신청은 토,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합니다.
- 신청서 다운로드와 교부(학교 및 구청)도 4월 15일부터입니다.
- 전자 신청은 시스템 유지보수 작업 등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만, 신청 기간은 변경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◆ 신청 방법 (아래의 ①~④ 중 한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)

##### ① 전자 신청

사카이시 전자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  
오른쪽의 QR 코드를 스캔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전자 신청은  
여기로



##### ② 우편에 의한 신청

사카이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홈페이지에 기재된 '우편 발송 시 주의사항'에 따라 **2026년 4월 30일(목) (※당일 소인 유효)**까지 우편으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.  
또 2쪽 2-(2)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분은 첨부 서류(복사본)도 동봉해 주시기 바랍니다.

**우편 보낼 곳** <<〒590-0078 堺市堺区南瓦町 3-1 堺市教育委員会 学務課>>

**School Affairs Division (Gakumu-ka), Sakai City Board of Education (Sakai-shi Kyoiku-iinkai),  
Minamikawaramachi 3-1, Sakai-ku, Sakai City, Osaka>>**

##### ③ 학교로 신청(신청보호자의 계좌로 입금을 희망하실 경우에도 학교신청이 가능합니다)

사카이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거나 학교에서 신청서를 입수한 후 학교에 제출(토,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)해 주십시오. (초, 중학교에 형제자매가 있는 가정은 **초등학교에 제출**해 주십시오).  
또 2쪽 2-(2)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분은 첨부 서류(복사본)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# ④ 구청 창구로 신청

신청 기간(토,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)의 오전 9시~오후 5시 15분 각 구청의 신청 창구로 다음을 지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.

- 1 도장(인주를 사용하는 것) ※신청보호자가 자필로 서명하는 경우는 필요 없음
- 2 신청보호자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를 알 수 있는 것
- 3 2쪽 2-(2)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분은 첨부 서류(복사본)

**취학원조(의료비 이외)에 관한 문의처**

<b>사카이시 교육위원회</b>	<b>학 무 과</b>	<b>TEL 072-228-7485 (직통)</b>
	<b>장 학 계</b>	<b>FAX 072-228-7256</b>
		<b>Mail kyogaku@city.sakai.lg.jp</b>

## 2 대상이 되는 세대

사카이시에 주소가 있으면서 공립 초·중학교(국립, 지원학교는 제외)에 재적하는 아동 및 학생의 보호자로 다음의 (1) 또는 (2)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.

(1) 2025 년분(2025 년 1 월~12 월)의 동일세대 전원의 소득합계액(국내외를 불문하고 단신부임자의 소득 및 연금, 퇴직금 등도 포함)이 아래 표의 기준액 이하인 세대

가 족 수	2 명	3 명	4 명	5 명	6 명
기 준 액 (급여 수입 기준)	217 만엔 (337 만엔)	260 만엔 (393 만엔)	291 만엔 (432 만엔)	326 만엔 (476 만엔)	368 만엔 (528 만엔)

- **소득액**⇒급여소득자는 원천징수표의 '급여소득 공제 후의 금액'입니다. ('지급금액'이 아닙니다)  
 · 급여소득자 또는 공적연금 등 소득이 있는 분은 총소득금액에서 10 만엔(상한)을 공제합니다.  
 사업소득자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 됩니다.
- **기준액**⇒기준액은 **참고치**이며 세대 구성원의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.

(2) 다음의 **어떠한** 항목에라도 해당하는 세대  
 해당하는 경우에도 ③·⑤~⑩의 '신청서에 첨부할 서류' 첨부가 없으면 2025 년분 소득으로 심사받게 됩니다.

해 당 이 유		신청서에 첨부할 서류(복사본 가능)
신청 시	①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분	불필요 ※ 6 월 이후 심사 때의 가족 구성에 따라 심사합니다.
	② 아동부양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분 (아동수당이 아닙니다)	
	③ 직업안정소(헬로워크)에 등록된 일용직 근로자	
2025 년내 부과 2026 년내 에	④ 생활보호가 정지 또는 폐지된 분 (가족구성 변경에 의한 경우는 제외)	불필요
	다음 ⑤~⑧ 항목에 대해서는 '감면(減免)'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.	
	⑤ 시민세가 감면된 분	○시민세, 부민세 세액 변경통지서
	⑥ 개인사업세가 감면된 분	○개인사업세 감면결정통지서
	⑦ 고정자산세가 감면된 분	○고정자산세 부과결정통지서
	⑧ 국민건강보험료가 감면된 분	○국민건강보험료 경정 결정통지서 (가족 전원이 대상인 경우에 한함)
	⑨ 국민연금보험료가 면제된 분	○국민연금보험료 면제·납부유예신청 승인통지서 · 20 세 이상의 납부대상자 전원의 것이 필요 · 면제 기간이 6 개월 이상인 자가 대상 * 이름 및 면제기간이 적혀있는 페이지가 필요
	⑩ 생활복지자금의 대부를 받은 분 (교육지원자금을 제외)	○생활복지자금 대부 결정통지서

※ 올해 들어서 보호자의 실업, 세대 상황의 변화(사망, 이혼) 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유로 취학이 곤란해진 경우나, 그 외 모르는 것이 있으면 1 쪽의 문의처로 상담해 주십시오.

### 3 원조의 내용

«4 월 신청자의 연액»

지급비 항목 학교·학년		학용품비 등	입학용품비 (4월 신청자에 한함) *1 입학준비금	교외활동비 (숙박할 경우)	수학 여행비	무도비	의료비
초·중학교	1 학년	13,230 엔 ( 4 월 1,130 엔 5~3 월 1,100 엔)	64.300 엔	실 비 (3,690 엔 이내)	실비	/	학교에서 의료권을 발행
	2~5 학년	15,500 엔					
	6 학년	( 4 월 1,310 엔 5~3 월 1,290 엔)	※81.000 엔				
중학교	1 학년	25,040 엔 ( 4 월 2,160 엔 5~3 월 2,080 엔)	81.000 엔	실 비 (6,210 엔 이내)	실비	실 비 (7,650 엔 이내)	
	2~3 학년	27,310 엔 ( 4 월 2,340 엔 5~3 월 2,270 엔)	/				

- 학용품비 등— 신청월부터 개월수로 나누어 교재비용 등  
학교징수금·통학용품비용·교외활동비용(당일치기) 등의 비용의 일부
- 입학용품비— 4 월에 취학원조를 신청한 초·중학교의 1 학년생의 분만 대상(입학준비금과 중복 지급은  
없습니다)  
※1 입학준비금-초등학교 6 학년생만 대상이며 **3 기 지급시(3 월 중순)에 지급합니다.**
- 교외활동비(숙박을 수반)—실시월 이전에 신청이 있었으며 참가한 분만 대상(교통비, 견학료, 입장료만)
- 수학여행비— 실시월 이전에 신청이 있었으며 수학여행에 참가한 분만 대상(교통비, 숙박비, 견학료,  
입장료 등)  
※ 초·중학교 각각 재학중에 1 회
- 무 도 비— 중학교의 수업에서 시행하는 유도의 유도복·스모의 마와시(스모의 아래의 옷)의  
구매비용 등으로 개인적으로 스포츠용품점에서 산 경우에는 영수증(보호자 또는  
학생의 성명, 금액, 구매품목명, 수령일, 판매점 명의 기재가 있을 것)이 필요(3 년간에  
한 번만이며, 거슬러 올라서의 지급은 없습니다).
- 의 료 비— 학교에서 치료를 지시한 대상 질병에 한하여 치료에 드는 보험진료비의 본인  
부담액분 (뒷면 참조)
- 급 식 비— 공회계의 학교급식비로 총당하므로 보호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.

## 4 신청 시의 주의사항

- 생활보호의 교육부조가 정지, 폐지된 경우 취학원조 신청이 없으면 원조는 받을 수 없습니다.  
원조를 희망하시는 분은 취학원조를 신청해 주십시오.
- 생활보호의 교육부조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는 수학여행비와 의료비만 대상이 됩니다.  
수학여행을 시행하는 학년의 자녀가 있는 세대는 취학원조 신청이 없으면 수학여행비의 원조는 받을 수 없습니다. 반드시 취학원조를 신청해 주십시오.

가부 결정은 세대 전원의 소득액과 부양상황을 고려해서 심사합니다. 아래 사항에 주의하십시오.

<b>2026년 1월 1일 현재의 주소</b>	<b>※ 반드시 소득신고 등을 마치시기 바랍니다.</b>
<p>사카이시 ————— 2025년의 소득 신고를 안 하신 분은 조속히 신고하십시오. (소득신고 등을 마치신 분은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음)</p> <p>기타 시구청촌(市區町村) — <b>6월경에</b> (<u>'과세증명서'의 발행시기는 대략 6월 이후가 되기 때문,</u> 거주했던 시구청촌에서 발행하는 <b>2026년도 '과세증명서'</b>를 <b>제출해야</b> 합니다.(원천징수표는 불가) · 거주했던 시구청촌에서 <u>소득신고 등을 마치시기 바랍니다.</u> · <u>5월 이전에 입수한 '과세증명서'는 2025년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</u> <u>확인하십시오. 자세한 사항은 거주했던 시구청촌에</u> <u>확인하십시오.)</u></p> <p>* <u>급여소득자로 근무처에서 소득이 보고되는 경우에는 소득신고가 필요 없지만, 피부양자(동일생계 배우자 및 공제대상 부양친족)로 되어 있지 않은 분은 그 분의 소득신고가 필요합니다.</u> * <u>수입이 없어도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 주십시오.</u>(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분은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.)</p>	

- 취학원조 신청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 승낙한 후에 신청을 해 주십시오.
  - ◆ 가족 전원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해서 확인할 것.
    - ①주민기본대장 ②시민세 및 부민세의 과세대장 ③생활보호의 수급상황 ④아동부양수당의 수급상황 ⑤신체장애자수첩 및 정신장애자복지수첩의 등급 및 요육수첩의 구분
  - ◆ 취학원조금에 관한 인정 및 지금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카이시 및 기타 시구청촌의 관련 기관에 조회 또는 통지할 것.
  - ◆ 취학원조(입학준비금)의 지급 후에 국립 및 사립 중학교, 지원학교에 진학했을 경우는 전액 반환할 것.
  - ◆ 취학원조의 급식비를 사카이시립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비(학교급식법 제 11 조 제 2 항에 규정하는 학교급식비를 말함)로 충당할 것.
- 취학원조의 지급에 있어서는 학교장을 원조금을 받는 사람으로서 위임했을 경우 및 아래 표의 '인정자에 대한 지급예정시기'의 전월 15 일 현재에 있어서 학교납부금 등에 미납이 있는 경우는 그 기의 원조금(전액)을 학교장 경유로 지급합니다.

## 5 결정 통지와 인정자에 대한 지급시기

신청월	각 통지의 송부		인정자에 대한 지급예정시기 ※2는 신청 달 해당분부터 지급 대상		
	인정·비인정통지	계좌이체통지	1기(4~7월)분	2기(8~12월)분	3기(1~3월)분
4·5월	7월중순	7월중순	※7월중순	12월중순	3월중순
6~10월	신청월의 다음 월중	12월중순	/	※12월중순	3월중순
11~2월	(2월 신청은 수시)	3월중순	/	/	※3월중순

- 신청 후의 각종 통지는 우송해 드립니다.
- 수학여행 등의 출결 등 원조액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에 확인 후 지급합니다.
- 심사 절차상, 지급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

